유전스 輸入期間은 환원되어야 한다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Ⅰ. 머리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성립되는 거래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례는 구매자나 수입자가 상품과 교환조건으로 현금결제해야 하지만, 原油는 수송기간등을 고려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精油社 또는 종합무역상사)에게 선적후 30일 또는 60일(공급자 신용기간)까지 신용을 공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적과 동시에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일람불 결제조건과 달리 일정기간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기한부 결제조건(유전스 L/C 및 D/A)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유수입과 유전스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로서 원유수입에 있어서 유전스 사용이 불가피하다는데에 석유산업의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당국이 해외부문에서의 통화량 증가억제와 단기외채의 축소를 위해 原油의 延支給수입(유전스수입) 기간을 내년 1월부터 현행 12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키로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정유업계는 더욱 심각한 자금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 정유업계가 유전스수입기간을 종전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Ⅱ. 유전스制度

유전스란 국내수입업자가 국내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외국수출업자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아 물품을 수입하고, 일정기간후에 수입대금과 신용공여기간의 이자를 결제하는 일종의 국제금융을 말한다. 이러한 유전스는 신용공여자에 따라 수출업자가 직접 공여하는 Shipper's usance와 외국금융기관이 공여하는 Banker's usance로 구분된다.

그러나 유전스수입은 수입대금 결제유예에 따른 자금부담경감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외채의 발생으로 一國의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原油도입유전스란 原油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原油를 선적한 날부터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로 산유국이 제공하는 외상기간(Shipper's usance)과 외국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신용기간(Banker's usance)

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제원유시장에서의 Shipper's usance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예외적으로 60일을 허용하는 기간도 있으나, 이 때는 추가 30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관례이다. Banker's usance기간은 지난 83년 12월부터 120일이 적용되고 있다.

유전스 輸入期間 變動內訳

(單位 : 日)

75.2	77.9	77.11	77.12	79.8	79.12	83.5	83.12	87.1
180	150	120	90	120	180	150	120	90

Ⅲ. 原油도입유전스의 사용배경

原油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거래물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인데 반해, 精油社가 원유를 선적한 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하기까지에는 원유수송기간, 재고 보유기간, 외상판매기간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국내 정유사의 경우, 1회전기간은 대략 100일에서 12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유도입시 유전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1백여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는 하루 원유량을 50만배럴로 가정할 경우, 하루 50억원의 결제자금이 필요하며, 판매대금 회수시까지는 무려 5천여억원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이나 국내여신으로 충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원유도입유전스를 국내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유전스 금액만큼의 신용공급이 늘어나거나 다른 부문의 여신을 줄여야 하는 바, 이는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精油社는 기업활동이 계속되는 한 막대한 이자비용, 換差부담등을 감수하면서 유전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Ⅳ. 유전스政策에 대한 精油業界의 입장

금년초부터 계속되는 原油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 油價의 인하로 국내정유업계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것은 국내정유사들이 유전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종전의 약 44%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반면, 운전자금 소요액은 정부의 국내油價유지정책과 정유사의 재고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즉각적인 국제원유가격 하락 분의 환수로 그 감소폭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原油대금의 52%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관일까지 정부에 납부케 함에 따라 精油社의 자금부족액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금난의 해소를 위해 정유업계는 지난 4월 유전스수입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부족자금의 국내차입 및 석유사업기금 납부일의 일부 연장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협의되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지난 5월 이후 6월말까지 총1천5백억원의 운영자금을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또한 1천2백80억원의 산업은행 외화표시자금융자를 신청중에 있다. 이에 더하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석유사업기금 납부기일의 연장을 추진하여 자금부족액을 겨우 메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유전스수입기간 30일 단축은 정유업계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1천6백억원의 추가자금부족을 초래할 것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精油社들이 추진중인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운영자금 차입규모를 1천5백억원에서 3천1백억원으로 확대시켜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국내精油社들은 계열기업군 여신규제로 인해 운영자금 차입에 한계가 있으며, 담보설정능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금융권의 여신제공능력도 精油社 운영자금 차입소요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V. 맺는말

精油社가 原油수입유전스를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原油선적에서 판매대금 회수시까지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精油社들의 자금부족현상은 국제원유가격의 하락과 정부의 油價유지정책 및 이에 따른 基金·関税인상이라는 정유사의 경영외적 요인에 기인된 것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관련업계에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기는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공급원을 축소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정유산업의 국제신용이 실추되는 경우, 업계의 경제활동이 제약받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국제신용의 하락과 나아가서는 국내에너지수요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할 우려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유전스수입기간을 당초 정유업계가 요청한 180일까지의 연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망정, 최소한 현행대로 120일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바이다. ◘

□産油國動向□

低油價 對應 서두르는 北海石油

原油價의 폭락이 北海석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과 6개월전만 하더라도 국제원유값이 배럴당 10달러 이하가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지노 선이 허물어지듯 油價 10달러선이 무너짐에 따라 석유회사들은 이에 대응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현재의 國際石油市況이 아닌가 싶다.

北海油田과 관련된 노르웨이, 英國 등이 앞으로 油價下落에 따른 생산량 감축에 대비해서 석유회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더라도 새로운 税制의 시행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정부가 低油價에 대비, 北海油田의 운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新税制의 골격을 내보였으나 석유업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이 税制案을 금년 가을에 國會承認을 얻어 '87년초부터 적용,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르웨이정부는 외국회사들의 탐사비 전액부담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4년간 외국회사들은 1억 3천만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수익성 증대를 위해 開發油田에 대한 로얄티 비율(현재 8%~16%)을 제로(Zero)로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로얄티가 전적으로 철폐될 수는 없으므로 이 문제는 변경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세째, 비용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利益原油에 대한 35%(1980년 책정)의 특별세율을 30%로 완화했다.

네째, 現金流通의 원활화를 위하여 新油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모든 비용이 지출되기 시작한 때부터 조속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개선 움직임은 앞으로 유전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촉진시키는 효과는 있겠으나 油價下落으로 인한 손해를 메울만한 석유회사들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英國이 마련하고 있는 税制緩和 계획에도 이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